

##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중 제1항의 "100인"을 "60인"으로 한다.

안 제6조 제3항을(자문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) 삭제한다.

안 제7조 제4항중 "심의사항"을 "자문사항"으로 한다.

\*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"제3항"을 제2항"으로 한다.

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3조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
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본문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항제목을 (시행일)로 하며,  
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  
(조례 제2192호 1995. 4. 28)는 이를 폐지한다.

##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21세기 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2조 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2.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지역현안 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도 도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위원 1인을 임명한다.

④위원은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다음기준에 의거 인선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
2. 학계, 종교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,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
3. 농업, 제조업, 건설업, 상업 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
4. 주부, 출향인사,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 저변층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7조 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에 행정제도분과위원회, 산업경제분과위원회, 환경복지분과위원회, 건설교통분과위원회, 정보과학분과위원회,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,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희망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분과위원회의 주요 연구대상 및 자문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
1. 행정제도분과위원회는 행정조직 개편, 민원행정 개선, 재정확충, 수익사업 등 행정 및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
2.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, 중소기업 지원, 지역간 산업의 균형배치,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농촌경제를 포함한 산업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3. 환경복지분과위원회는 환경보전 정책을 비롯한 여성의 사회참여, 계층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4. 건설교통분과위원회는 도로·광역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교통난 해소대책 등에 관한 사항
5. 정보과학분과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 지원, 지역정보 기반 구축, 과학기술 분위기 확산 등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
6.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충북정신 계발, 충북학 연구, 체육진흥, 관광진흥 등 문화예술의 저변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8조 (사무처리)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·단체 등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간사위원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9조 (발표회등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·토론회·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 (조사·연구의 의뢰등)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조사·연구의 방법 등에 있어서 관련 기관·단체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, 시·군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 (수당등) 위원회의 위원 및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  
조례(조례 제2192호 1995. 4. 28)는 이를 폐지한다.